

예천군 공고 제2024 - 1433호

「용궁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」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공람·공고

예천군에서 시행하는 「용궁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」과 관련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(보상계획의 열람 등) 및 제21조(사업인정에 대한 협의 및 의견청취)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, 토지소유자,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10. 21.

예 천 군 수



1. 사 업 개 요

- 가. 공 사 명 : 용궁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
- 나. 사업위치 : 예천군 용궁면 일원
- 다. 사 업 량 : 배수펌프장(읍부, 향석) 신설 2개소, 우수관로 정비 L=2.68km
교량(원당교) 1개소, 소하천 정비 4개소 L=5.16km
- 라. 시 행 자 : 예천군수(안전재난과)
- 마. 사업기간 : 2024.1.1 ~ 2026. 12. 31.(3년간)
- 바. 사업규모 : 총면적 134,935.72㎡

2. 열람 및 이의신청

- 가.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: 2024.10.21. ~ 2024.11.5.(15일간)
- 나. 열람방법
 -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예천군 홈페이지(<https://www.ycg.kr>)에 게재
 - 예천군청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에 비치하여 일반인들에게 열람
- 다. 이의신청
 -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예천군청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(☎054-650-6332)으로 방문
 - (전자)우편·FAX(054-650-6159)로 서면 제출(전자우편 : pgw118@korea.kr)
- 라. 이의신청 제출장소 : 예천군청 안전재난과(경북 예천읍 예천읍 충효로 111, 4층)

3. 보상대상 : 불입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조서과 같음
(예천군청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에 비치하여 열람 가능)

4. 보상 시기

- 감정평가 : '24년 11월 ~ 12월

- 보상협의 : ' 24년 12월 ~

※ 상기일정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,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※ 개인별 보상대상 물건 및 내역, 보상액, 보상절차,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우편 통지합니다.

5. 보상 방법 및 절차

가. 보상방법 :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(현금보상[계좌입금])

나. 보상절차 : 보상계획통지(열람 및 이의신청) → 열람 및 이의신청 →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→ 보상협의 → (협의 불성립시) 재결 절차 진행

① 협의(계약서체결시) → 소유권이전 → 보상금 지급

② 협의 불성립 → 수용재결신청(토지수용위원회) →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(예천군) → 수용재결 심의(토지수용위원회) → 보상금 공탁 → 소유권 이전

※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, 토지보상법 제83조,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.

다.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

1)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에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·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**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(2024.12.4.까지)**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,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2)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으며, 시·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·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평가합니다.

6. 기타사항

- 가.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개별 통지하고,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 통보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.
- 나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안전재난과(☎054-650-633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의견서

신청인	성명 또는 명칭	
	주 소	
	토지소유자 (이해관계인)	
대상 토지 및 물건		
이의신청 내용 및 이유		

「용궁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」 보상계획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.

2024년 월 일

신청인 주 소 :

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연 락 처 :

예 천 군 수 귀하

감정평가업자 추천서

☐ 추천업자 : 감정평가법인

☐ 추천 일 : 2024. . .

[illegible]

※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기재한 후 인감날인 하여야 하며,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. 또한,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 등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
예천군수 귀하